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7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정연욱·주호영·김선교

이헌승 · 김소희 · 최은석

박정하 · 정동만 · 박수민

엄태영 · 김민전 · 박상웅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5,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여 K-콘텐츠 제작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콘텐츠에 음악, 게임, 출판물, 만화 등을 추가하고 세액공제율도 상향함으로써 K-콘텐츠의 창작활동 을 촉진하고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하여 콘텐츠 전반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25 조의6제1항제1호 등).
- 나.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각각 10%p씩 상향함(안 제 25조의6제1항제2호).
- 다.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제작대상에 음악, 게임, 출판 및 만화를 추가함(안 제25조의7).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의 제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를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에게"로 하며, 같은 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100분의 5"를 "100분의 15"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100분의 1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한다.

-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악영상파일
-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 같은 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상콘텐츠"를 각각 "콘텐츠"로, "최초 방송·상영 또는 제공일"을 "제공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3조(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
2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의6(<u>영상콘텐츠</u> 제작비용	제25조의6(<u>콘텐츠</u> 제작비용에 대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	한 세액공제) ①
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	
년 12월 31일까지 제1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영</u>	콘텐
<u> 상콘텐츠</u> (이하 이 조에서 " <u>영</u>	<u> 츠</u>
<u> 상콘텐츠</u> "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	
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용(이하 이 조에서 " <u>영상콘텐</u>	<u>콘텐츠</u>
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	
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u>콘텐츠</u>
<u>영상콘텐츠</u> 가 처음으로 <u>방송되</u>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
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	호에 따른 소비자에게
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	
하여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	
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	
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	
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u>영상콘텐츠</u> 가. ~ 다. (생 략) <u><신 설></u>

<신 설>

<신 설>

<신 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u>영</u> <u>상콘텐츠</u> 제작비용의 <u>100</u> <u>분의 5</u>(중견기업의 경우에 는 100분의 10, 중소기업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음반, 같은 조 제5호에 따
른 음악파일, 같은 조 제6
호에 따른 음악영상물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음

1. -----콘텐츠

악영상파일

- 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
- 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
 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및 같은 조 제
 5호에 따른 외국간행물
- 사.
 「만화진흥에 관한 법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출판만화 및 같은 조 제5

 호에 따른 디지털만화

2 -----

가 <u>콘</u>
<u>텐츠</u> 100분
<u>의 15</u>
-100분의 20

- 의 경우에는 <u>100분의 15</u>) 에 상당하는 금액
- 나. 추가공제 금액: 국내에서 발생한 제작비용이 총 제 작비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영상콘텐츠의 경우 그 제작비용의 100분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생략)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u>영상콘</u> <u>텐츠</u>의 범위, 제작비용의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저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제25조의6제1항제1호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 콘텐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 콘텐츠"라 한다)를 제작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

<u>100분의 25</u>	
나	
<u>콘텐츠</u>	
② (현행과 같음)③콘텐츠-	
③ <u>콘텐츠</u> -	
<u>.</u>	
세25조의7(내국법인의 문화산업	
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	
액공제) ①	
콘텐	
<u> 츠콘텐츠</u>	
<u> </u>	

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출자하는 경우 제1호의 금액과제2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의 1 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영상콘텐츠의 최초 방송·상영또는 제공일과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청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생략)

②·③ (생 략)

2. 해당 <u>영상콘텐츠</u>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으로 나눈 비율

<u>콘텐츠</u>
제공일
<u>.</u>
1. (현행과 같음)
2 <u>콘텐츠</u>
②・③ (현행과 같음)